

제 1099 호
1985.5.24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 모 면
편집인 : 공 보 관 조 남 호
전 화 : 731-6111-3
인 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 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- ◎ 고 시
 - 제 347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..... 3
 - 제 348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 (폐지) 3
- ◎ 공 고
 - 제 319 호 : KS 표시정리처분해제공고 4
- ◎ 사 련

공 보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47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 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 5.24.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
2. 사업주체
 - 가. 강서구 영창동 270-1 (주)성원주택 대표 원중관
 - 나. 강남구 방배동 101-1 수한건설(주) 대표 이한오
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
 - 가. 위치 : 구로구 은수동 산 17-20

호의 9필지

- 나. 면적 : 32,639 제곱미터
- 다. 규모 : 연립주택 3층 22동 405세대 (상가 3층 2동 및 부대 복리시설)

라. 사업시행기간 :

1984.11 - 1986.3

4. 사업승인 년월일 및 번호

가. 승인년월일 : 85.2.14일 변경승인

나. 번호 : 84-제 12 호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48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(폐지)

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 5.24.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구분	등급	폭원	연장	시점	종점	비고
기정	소로	6미터	115미터	구로구 은수동 45-12호	구로구 은수동 45-13호	
변경	"	"	"	"	"	폐지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19호

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고 제 82(85.2.4)호로 KS 표시 정지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처분을 해제하였기 동시현규칙 제 21 조 규정에 준

하여 이를 공고한다.

1985. 5. 24.
서울특별시장

- 1. 업체명 : 동부제강(주)
- 2. 대표자 : 안 병 화
- 3. 소재지 :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동123
- 4. 규격번호 : KSD 3563
- 5. 품목명 :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관
- 6. 종류등급 : 2 종
- 7. 해제일자 : 1985.5.24

사 령

◎ 1985년 5월 20일자

령제 172호

은평구 건설국 수도공사과 과장 지방토목기과 양규승
토목기과에 임함
마포구 건설국 토목과 과장에 보함

대 통 령

구로구 건설국 토목과 과장 지방토목기과 정병택
토목기과에 임함
영등포구 건설국 토목과 과장에 보함

대 통 령

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지방토목기과 최창식
토목기과에 임함
건설관리국 도로과 근무를 명함
도로서설제장에 보함

대 통 령

종로구 건설국 수도공사와 과장 토목기과에 임함	지방토목기과	김 병 완
종로구 건설국 토목과 과장에 보함		대 통 령
종로구 건설국 토목과 과장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	토목기과	주 봉 현
강동구 근무를 명함		대 통 령
마포구 건설국 토목과 과장 토목기과 조성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		서울 특별 시장
구로구 근무를 명함		대 통 령
영등포구 건설국 토목과 과장 토목기과 이원식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		서울 특별 시장
은영구 근무를 명함		대 통 령
건설관리국 도로과 토목기과 이체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		서울 특별 시장
종로구 근무를 명함 건설국장 직무대리를 명함		대 통 령
		서울 특별 시장